

제 629 호
1977.11.22

발행인: 서울특별시장 구자춘
편집: 문화홍보관 조용하
전화 75-7834
인쇄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전화 75-5444

시 보

차례

◎ 조례

제 1198 호 :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 3

◎ 훈령

제 477 호 : 서울특별시시세과징기 관과공무원의
실적 평가 및 평가에 관한 규정·증개정 규정 6

제 478 호 : 서울특별시지하철 건설조정위원회 규정 8

◎ 고시

제 407 호 :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 및 지적승인 9

◎ 공고

제 289 호 : KS 표시정지처 분공고 10

제 291 호 : 환경 계획변경 공람공고 10

제 295 호 : 도시계획 사업(도로) 실시계획공람공고 11

◎ 사령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2261

조 래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재개발사업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자춘

1977년 11월 22일

◎ 서울특별시조례 1198호

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

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도시재개발법(이하 「법」이라 한다) 및 동시행령(이하 「령」이라 한다)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시 행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가격평가위원회의 운영) ① 영 제 18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가위원회(이하 「위원회」라 한다)의 위원중 토지 및 건물소유자로서 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는

회의 개최통보로서 위촉에 가름하고 회의종료로서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②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인 위원은 도시정비국장 및 도시정비담당관으로 하고 각각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된다.

③ 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 약간인을 둔다.

④ 보궐위원의 임기, 위원장의 직무 및 대행과 위원의 수당에 관하여는 영 제 67조 및 제 68조의 지방도시재개발심의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와 회의록작성에 관하여는 영 제 60조 및 제 65조의 중앙도시재개발심의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3 조 (가격평가절차) ① 법 제 9조 제 10조 및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가격평가신청서에 담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가격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소유권자가 명시된 토지 및

17-4 제 629 호 시

보 1977.11.22

건축물의 평가와 평세서 3부
2. 현황측량도(지적명시) 3부
3. 토지대장, 가옥대장, 토지 및
건물등 기부의 등본 각 1부
② 위원회의 간사는 2개이상의
공인 감정기준의 감정을 받아 그
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조서를
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
한다. 이 경우 감정수수료는
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.

제 4 조 (지방도시재개발심의회의 운영)

- (1) 영제 66 조의 규정에 의한 지
방도시재개발심의회(이하 「지방심
의회」라 한다)의 위원중 토지
및 건물소유자인 위원은 회의개최
통보로서 위촉에 가동하고 회의종
료로써 해촉된 것으로 본다.
②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인 위원
은 제 2 부시장, 도시정비국장 및
도시정비담당관으로 하고 회장은
제 2 부시장이 부회장은 위원중에서
호선한다.
③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, 회의
록작성, 간사 및 서기에 관하여는
제 2 조제 3 항 및 제 4 항의 규정을
준용한다.

제 5 조 (공동구의 관리비용징수) ①

영제 51 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
관리비용은 공동구의 유지 및 수선
비(조명, 배수, 통증, 방수, 개축,
재해복구 기타 시설비 및 인전비
를 포함한다)를 연도별로 산출하여
그 비용의 일부를 공동구점용면적
비율에 따라 시장이 매년 1회
조정 부과한다.

② 공동구 관리비의 납기는 매년
3월 말일로 하고 납기 1개월전까
지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.
다만 필요한 경우 2회로 분할
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
분할금의 납부기일은 3월 말일과
9월 말일로 한다.

제 6 조 (수익자부담금징수) ① 영제
52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
자부담금의 산출에 있어서 「토지
또는 건축물의 가격」은 지방세법
에 의거한 과세시가 표준액 또는
공인감정기준의 감정가격을 기준으
로 하되 재개발전의 가격은 재개
발사업인가 고시일이 속하는 월을
기준으로 재개발후의 가격은 분양
처분고시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
분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.
② 수익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

개발사업이 완료된 구역 또는 지구의 경계로부터 100 미터이내의 토지 및 건축물도 한다.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.

1.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
2. 조세 기타 부담금의 면제를 받는 기관이 소유하는 토지및건축물
3. 부과대상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, 도시계획법, 하천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품여하는 토지 및 건축물
4. 1개지역에 대하여 재개발 수익 자부담금이 부과또는 징수된 대상에 대하여 그 부과일로부터 5년이내에 다른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중복 부과되는 경우
5.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
 ③ 부담금은 분양처분고시일 현재의 소유권자단위로 그 고시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분기의 과세표준 액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부과 고지하여야 한다. 이경우 낭기는

부과일로부터 1개월로 하고 필요한 때에는 2회에 한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부담금의 부과및 징수에 관한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할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7조(재개발사업기금의 관리운용) ① 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기금(이하 «기금»이라 한다)의 수입금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.

1. 법 제 63 조 및 영 제 54 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수입
2. 법 제 58 조 및 제 59 조, 영 제 49 조 제 50 조, 제 51 조 및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부담금 수입
3. 법 제 60 조 및 영 제 53 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및 국고융자금수입과 영 제 55 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대출이자 수입
4. 재개발사업에 관련되는 수탁사업수입
5. 타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수입
-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 각호의 사업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 1. 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융자
 2. 법제57조제2항 및 영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

17-6 제 629 호 시

보 1977.11.22

부 담

3. 재개발구역 내 도시계획사업 및 편현수탁사업

4.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

5. 재개발사업을 위한 조사계획 및 행정지원비

(3) 기금운용계획의 승인, 수정, 결산등 기금의 관리운송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.

제 8조 (기금의 회계직공무원) ①
울특별시장은 기금의 수입,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.

②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중세 입장수판, 지출판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이를 준용한다.

제 9조 (기금의 구분처리) 기금의 수입 지출에 있어서는 재개발구역 또는 지구와 그 성격별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 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다만 재개발 사업 기금에 관한 규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제 2조 (조례폐지 및 경과조치) (1)이 조례시행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재개발사업 자격평가위원회운영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 재개발사업비 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(2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훈령

서울특별시세 과징기판과 공무원의 실적 관리규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77년 11월 22일

서울특별시장 구자춘

◎서울특별시 훈령 제 477 호

서울특별시세과징기판과공무원의 실적 관리 및 평가에 관한
규정 중 개정 규정

<p>서울특별시 시세과징기관과 공무원의 실적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규정 제목중 「시세과징기관」을 「세입금과징기관」으로 한다.</p> <p>제 1 조 본문중 「시세과징기관」을 「세입금과징기관」으로 한다.</p> <p>제 2 조 제 1 항중 제 3호 내지 제 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3. 채납액대 징수실적 4. 추징액대 징수실적 <p>제 2 조제 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 3항을 삭제한다.</p> <p>(2)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은 기관별, 회계별로 당해기관의 세입 징수분이 매월 15일까지 전월분 및 전월까지의 실적누계를 종합하여 시장(창조 세정과장)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제 3 조 제 1 항본문중 「시세」를 「세입금」으로 제 2호 「시세과징월보」를 「세입금납기내 및 납기후 과징월보」로 하고 제 3호 및 제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3. 채납액징수실적보고서 4. 추징액징수실적보고서 <p>제 3 조 제 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</p>	<p>하고 제 1호 내지 제 3호를 삭제한다.</p> <p>(2) 과징원의 근무 실적은 기관별소속 계장이 평가하고 소속과장이 이를 확인한다.</p> <p>제 4 조 제 1 항중 제 1호 내지 제 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수입목표대징수실적 40% 2. 부과액대징수실적 40% 3. 채납액대징수실적 10% 4. 추징액대징수실적 10% <p>제 5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 5조(상별등) (1) 세입금징수 유공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년 2회이상 상금을 수여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.</p> <p>(2) 시세 및 세외수입금 과징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또는 특별승진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</p> <p>(3) 재무국장은 세입금 과징실적이 극히 불량한 기관과 관계공무에 대하여 문제 또는 인사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(4) 세부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세입업무 이외의</p>
--	--

17-8 제 629 호 시

보 1977.11.22

다른 업무에 차출 근무케하거나
3년이내에 따른 부서로 전보발령
할 수 없다. 다만 재무국장의
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려하지
아니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
한다.

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조정위원회
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77년 11월 22일

서울특별시장 구자춘

◎ 서울특별시 훈령 제 478 호

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조정위원회 규정

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조정위원회 규정
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제 1 조 (설치) 지하철건설에 따른
종합적통제와 업무지원 및 조정을
위하여 제 2 부시장을 위원장으로
하는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조정위원
회(이하 「위원회」라 한다)를
둔다.

제 2 조 (직무) ① 위원회는 다음

작호의 사항을 조정한다.

1. 지하철건설에 관한 기본계획
2. 서울특별시종합도시계획과의 관
제
3. 자금에 관한 사항
4. 자재에 관한 사항
5.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부여하는
재지원사항

제 3 조 (구성) ① 위원회의 위원장
은 제 2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
기획관리관이 된다.
② 위원회의 위원은 내무국장, 재
무국장, 도시계획국장, 관광운수국장
건설국장, 하수국장, 수도국장, 지하
철본부장 및 주택건설사업소장으로
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
때에는 시장이 별도로 위촉할 수
있다.

제 4 조 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
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의 의
장이 된다.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
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
직무를 대행한다.

제 5 조 (회의) ① 위원회는 위원장
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
집한다.

제 629 호 시

보 1977.11.22 17-9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
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
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
결정권을 가진다.

제 6 조 (간사와 서기) ① 위원회에
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.
간사는 기획조사과장이 되고 서기는
지하철본부 직원중에서 위원장
이 임명한다.

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
받아 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
한다.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고시 제 407 호

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 및 지적승인

- 서울특별시도시계획시설인 공원에
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와 동법
제13조 및 건설부고시 제41호
(77.3.16) 권한위임 규정에 의거
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고시한다.
-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도시정책
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
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
한다.

1977년 11월 19일

서 울 특 별 시 장

가. 공원 결정 고시

구 분	공 원 명	위 치	면적	비 고
신설	구로제5아동공원	영등포구구로동 139-62	10,847	

※ 도면생략

17-10 제 629 호

시

보 1977.11.22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289 호

KS 표시정지처분 공고

공업표준화법 제21조 및 동법
시행규칙 운영요강 제27조 규정에
의거 다음과 같이 KS(한국공업규
격) 표시 정지처분하였기 동법시행
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이를
공고한다.

1977.11. .

서울특별시장

1. 허가번호 : 제 282 호
2. 허가일자 : 1967.7.27
3. 제조업체명 : 동아건설(주)
4. 대표자 : 이 창 익
5.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
문래동 2 가 27 번지
6. 규격번호 : KSB 1002
7. 품 명 : 6 각보울트(미터나사)
8. 처분기간 : 1977.11.10 ~
1978.2.10 (3개월간)

9. 표시정지사유 : KS 규격미달

10. 기준미달항목 : 경도 미달

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291 호

환지계획변경 공람 공고

1. 영동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
구내 환지예정지(아파트지구) 중
일부환지예정지에 대하여 환지계획
변경사유가 발생되었기 환지계획을
변경코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
조의 규정에 의하여 14일간 일
반의 공람에 공한다.

2. 환지계획변경도서는 도시정비국
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
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3. 본 공고내용을 토지소유자 및
이해관계인에게 별도 서류송달할
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
공고로 갈음한다.

1977.11.

서울특별시장

제 629 호 시

1977.11.22 1,-11

(환지계획변경내역)

- 가. 사업명: 영동 제1지구 토지구
회정리 사업
나. 변경면적: 54,567.8 평
다. 변경위치: 강남구 반포동 274의
48호의 183 평지

○ 서울특별시 공고제 295 호

도시계획사업(도로)
실시계획 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155호(77.5.
19)로 고시된 신문로-문화회관간
및 정부종합청사뒤 도로 개설공사
구간내에 저축 편입되는 토지의 도
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
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 제34
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
14일간 일반의 공람에 임하고자
이야 공고함.
2.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
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
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
음함.
3. 관계도서는 종로구청 토목과에 비
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
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77.11.24

서울특별시장

공람개요

1. 사업장의 위치: 신문로-시민회관 및
정부종합청사 뒤
2. 사업종류 및 명칭: 신문로-시민회관
및 정부종합청사 뒤
도로개설공사

3. 사업의 규모

가. 신문로-시민회관간 도로 개설
공사

B = 15 미터 L = 150 미터

아스팔트포장: 14.7a

홀판부설: 239 미터

유색보도부력포설: 6a

나. 정부종합청사 뒤 도로 개설공사
B = 15 L = 180 아스팔트포장 20a
홀판: 351 미터. 유색보도부력포설 7a

4. 사업시행자: 서울특별시장

5.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: 77.11.20
- 77.12.30

6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:

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
지수용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
관계인

주소, 성명: 다음

17-12 제 629 호 시

보

1977.11.22

수 용 토 지 조 서

신문로~시민회관간

토지 소재		이 동 전			이 동 후			소 유자	
구	동	지번	지목	면적(평)	지번	지목	면적 (평방m)	주 소	성 명
종로구	신문로 1가	23-2	대지	38.1				신문로 1 가 22	오형근
		18		15.2				18	이세진
		19		24.5				당주동 28	이용락
	당주동	35		40.7					구본정
		36		21.0				36	이상용
		34		2.4				34	김희경
		37-7		38.2				37-4	김인숙
		37-2		2.6				37-2	정선우
		37-3		42.9				37-5	정승인장
		39-5		10.3				소공동 116-1	최경애택
		39-3		15.9					서울은행 (주)
		39-1		26.7				당주동 63	이상훈
		40-2		7.6				중구 신당동 293-14	이창식
		42-1		96.4				당주동 42	하수옥
		43-2		1.3				43	임용연
		45-12		25.1				45-2	이준희외 3인
		44-2		29.7				44-2	현봉희
		43-1		0.2				43	임용연

제 629 호

시

보

1977. 11. 22 17-13

수 용 전 물 조 서

신문로~시민회관간

토지 소재	이 동 전			이 동 후			소 유 자			
	구	동	지번	각 조	면적(평)	지번	지목	면적 (평방m)	주 소	성 명
종로구	신문로 1가	18	철근 콘크리트	48.0					좌 동	이세진
"	"	19	"	22.0					"	이용덕
"	당주동	34	"	4.0					"	김희도
"	"	35	목조 와습	23.0					당주동 36-2	구본정
"	"	36	"	44.0					"	김상억
"	"	37-2	"	2.0					좌 동	서인창 외 1인
"	"	37-3	연화조	70.0					"	박예순
"	"	39-2 3	목조 와습	10.0					당주동 39-2	하형
"	"	42	철근 콘크리트	80.0					좌 동	전옥순
"	"	40	"	15.0					"	이창식
"	"	43	목조 와습	4.0					"	박만금
"	"	44-1	"	44-1					"	현봉희
"	신문로 1가	23	철근 콘크리트	23					"	오형근
"	당주동	37-4	목조 와습	37-4					"	김인숙
"	"	45-2	"	45-2					"	박만금

17-14 제629호

시

보

1977.11.22

토지 소재	수 용 토 지			정부종합청사위	
	이 동 전	이 동 후	소 유자	주 소	성 명
구 동	지번	지목(면적면적)	지번	지목(면적면적)	
종로구 청진동	59-6	대지 2.1			청진동 276 김형완
" "	59-7	" 2.6			" "
" "	59-1	" 32.2			" "
" "	68-2	" 23.8			" "
" "	58-6	" 3.2			" "
" "	59-6	" 5.0			화동 이재홍
" "	59-2	" 3.2			양인회
" "	59-8	" 1.0			이재홍
" "	59-9	" 7.3			양인회
" "	60-3	" 13.4			이윤철
" "	60-4	" 13.5			김용기
" "	182-1	" 9.2		소공동 112-26	한국산업 (주)
" "	183-1	" 26.0			조용내
" "	184-6	" 1.6			" "
" "	184-9	" 1.3			" "

토지 소재		이동 전		이동 후		소유자	
주	동	지번	지목 면적(평)	지번	지목 면적 (평)	주	소성명
종로구	직선동	184-5	대지 2.4			소공동 112-26	조용태
"	"	184-4	" 11.6			역촌동 58-37	조생현
"	"	183-2	" 21.4			화동	박운봉
"	"	183-3	" 5.6			"	"
"	"	180	" 13.9			"	김영우 최종환
"	"	180-1	" 7.1			"	"
"	"	185-1	" 44.1			"	최중환
"	"	176-1	" 26.1			"	문기남
"	"	177-1	" 62.8			"	윤종태
"	"	191	" 7.6			"	이광희
"	"	191-1	" 9.4			"	"
"	"	195-3	" 56.0			"	김정진
"	"	195-2	" 8.1			"	정인수
"	"	198	" 15.0			"	이기성
"	"	199	" 15.0			"	정철준
"	"	197	" 20.2			"	이소애
"	"	200-1	" 16.8			"	김성자

17-16 제 629 호

시

보

1977.11.22

수 용 전 물 조 서

<정부종합청사뒤>

토지 소재		이 동 전		이 동 후		소 유 자			
구	동	지번	구조	면적(평)	지번	지목	면적 (평방m)	주 소	성 명
종로구	적선동	200-1 201-1	철근 콘크리트	67.0				화동	김설자
		199	연외조	7.0					임명숙
		198		8.0					
		197	목 와 조 죽	16.0				신문로 2자 105	김종상
		195-2	연외조	24.0				화동	정인수
		195-1	목 와 조 죽	34.0					김정진
		193- 194	철 근 콘크리트	125.54					정인영
		192	목 와 조 죽	15.0					김창완
		177		51.0					
		187		23.46					최종환
		185		66.0					
		184		16.0					
		182		17.0					한우산업
		180		12.0					월순천
		181	철 근 콘크리트	56.13					최경옥
		60-2	목 와 조 죽	13.0					길운기
		60-1		14.0					이문열
		59-2		7.0					양안희

사령

○ 1977.11.15

제1근로자회관 지방행정
주 사 초 총 원
원에 의하여 그 책을 명함.

○ 1977.11.17

상 정 과 지방행정
주 사 고 각 무
지방공무원법 제63조 3항의 구
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.

○ 1977.11.22

기자단원과 일 지방행정
주 사 보

전체 의하여 그 책을 명함.

○ 1977.11.25

성 동 구 지방행정
주 사 무 관

지방서기관에 주시함.